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9,074,044	14,072,221
일반회계	435,807,898	13,074,237
특별회계	33,266,146	997,984
공기업특별회계	5,920,660	177,62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5,920,660	177,620
기타특별회계	27,345,486	820,36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46,808	70,40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46,588	22,398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50,774	199,52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50,066	34,5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71,103	20,133
수질개선 특별회계	9,847,628	295,429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5,932,519	177,97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12,85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